

# 물품 매매계약서

○○○사(이하 매수인)와 ○○○사(이하 매도인)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매매내용 】

1. 매매물건
  - 1) 품목번호 :
  - 2) 상품 및 명세 :
  - 3) 수 량 :
  - 4) 단 가 :
  - 5) 금 액 :
2. 선적시기 : 20 년 월 일
3. 선적항 : ○○항
4. 도착항 : ○○항
5. 대금지급
  - 1) AT SIGHT L/C : 일람불취소불능 신용장
  - 2) USANCE : 기한부 취소불능확인 신용장
  - 3) DP : 인수도지급
  - 4) DA : 선적일로부터 ○일 만기 환어음
  - 5) DD : 요구불어음
  - 6) TT :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 전신환
  - 7) MT : 우편환
6. 보 험 : 매수인이 (CIF) 가격의 ○% 부보 (ALL risks War an SRCC risks)
7. 포 장 : Export Standard Packing
8. Marking :

## 제 2 조 【 수 량 】

본 계약에 정한 수량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 3 조 【 선 적 】

선하증권에 기재된 일자가 (B/L date)가 선적일이 된다. 선적에는 ○일의 준비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이 허용된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항해가 사전 결정된 선적일보다 늦어진 경우 매도인은 선적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제 4 조 【 포 장 】

포장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만약, 매수인이 특별한 지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동 지시를 따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제 5 조 【 보 험 】

CIF와 CIP 조건일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청구서 (계약)금액의 ○%를 부보한다. 매수인이 요청하는 추가보험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은 해상보험만 FPA 또는 ICC (c)조항에 따라 커버한다.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추가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 제 6 조 【 비용증가 】

매도인의 원가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운임인상, 세금 기타 정부 부과금 또는 보험료로 상승되거나, 환율변동이 매도인의 원가를 상승시키거나 매도인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러한 원가상승이나 수익감소를 보상하기로 한다. 또한 매수인이 선적연기를 요청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매도인은 생산완료 후 제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품이 매도인의 시설에 보관되는 경우 적절한 보관료가 추가된다.

## 제 7 조 【 대금지급 】

1. AT SIGHT L/C : 무상환 일람불 취소불능 신용장이 본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매도인이 동의하는 일류은행을 통해 개설되고, 동 신용장은 최종선적일로부터 최소한 ○일 동안 발효되어야 한다. 신용장금액은 계약금액 및 매수인이 부담할 추가 비용을 커버해야 한다.
2. USANCE : 계약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어음발행일 또는 선적일기준) ○월의 기한부 취소불능확인 신용장을 액면금액 (○○○원), 수혜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조건으로 개설한다.
3. DP : 선적 후,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일람불어음 및 필요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매수인은 동 어음과 필요서류를 제시 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DA : 선적 후, 매도인은 필요 (선적)서류와 함께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만기가 ○○로부터 ○일인 환어음을 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인수 제시한다. 매수인은 동 환어음 및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환어음에 인수서명 (날인)하고 어음의 만기에 결제하여야 한다.
5. DD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요구불어음(D/D)으로 지급한다.
6. TT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 내에 ) 상품대금을 전신환(T/T)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의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다.
7. MT : 매수인은 필요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 내에 ) 상품대금을 우편환(M/T)으로 지급한다.

## 제 8 조 【 상품검사 】

상품검사는 대한민국 수출관련규정에 따르거나 제조업자가 하고 동 검사는 최종적이다. 매수인이 특별검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의 청구서에 포함되고 신용장금액도 따라서 변경된다.

## 제 9 조 【 품질보증 】

상품은 본 계약에 규정된 명세에 부합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개월 간 소재 및 제조공정에 하자 없음을 보장한다. 매도인의 본 보증에 따른 책임한도는 하자상품 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에 그친다. 본 보증은 (a) 상품이 오용되거나, 허술히 다루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b) 매도인 이외의 자가 부적절히 수리, 설치, 운반, 변경한 경우 (c) 매도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보장 및 특정목적 적합성보장은 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이익상실, 간접적·우연적·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0조 【 클레임 】**

본 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제기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fax나 cable 일자로부터 ○○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상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는 선적품의 인수로 되고 동 선적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매수인이 동의한 것이 된다.

**제11조 【 계약의 해지 등 】**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 또는 적시의 신용장개설을 포함하여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해지(해제)
2.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
3.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를 손해배상액으로 징구

**제12조 【 불가항력 】**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의 경우에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 지적재산권 】**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정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연원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 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4조 【 준거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제15조 【 중 재 】**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6조 【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1.
- 2.
- 3.

**제17조 【 기 타 】**

본 계약의 모든 무역용어는 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 2000에 따라 해석한다.

상기 내용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